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53

제안년월일 : 2020년 9월 7일
제 안 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내용 중 일본식 한자어 표기인 “자(者)”를 고유어나 쉬운 말로 바꾸기 위해 “사람”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으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면 ‘자(者)’가 ‘사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쓰고, ‘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하여 의미할 때에는 ‘자’를 그대로 쓰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애용을 제외하도록 함.

2. 주요 골자

○ 안 제14조제1항 및 한 제14조제2항제6호의 “자(者)”를 “사람”으로 쓰는 것을 수정하지 않고, 기존 대로 사용함.

3. 참고사항 :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사람”으로 한 것을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 본문 중 “사람”을 “자”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이용료) ① 시장은 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① ----------사람----------.	제14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의사상자·장애인·65세 이상 노인·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토요일교외체험학습 참여자·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	2. ----------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2. (개정안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6.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6. ---------- 사람.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⑦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⑦ (개정안과 같음)
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음)	제17조(금지행위)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4. 거리가게----------	4. (개정안과 같음)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5.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을 “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행상 또는 노점”을 “거리가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이용료) ① (생략)	제14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의사상자·장애인·65세 이상 노인·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토요일교외체험학습 참여자·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	2. ----------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4. 거리가게----------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